



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흐름과 시사점

문혜정 연구원

EU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8년 5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,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이 많은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임. 구체적으로는 기존 데이터 자산의 경쟁력 약화, 새로운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 등의 위험요인이 예상됨. 전 세계는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있으며, 이에 따라 국가별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
■ EU의 개인정보보호법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, 이하 'GDPR')이 2018년 5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

- GDPR의 핵심은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데이터 주권을 갖는 것으로, GDPR에 근거하여 소비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개인정보의 열람, 삭제, 이동 등을 요구할 수 있음¹⁾
- GDPR은 기존 EU 개인정보보호지침(Data Protection Directive 95/46/EC)에 비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이 강화됨
 - 제20조 정보이동권²⁾, 제18조 처리제한권³⁾ 신설 등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함
 - 데이터보호책임자(Data Protection Officer, 이하 'DPO') 의무지정 요건 추가, 위반 시 상당한 과징금⁴⁾ 부과 등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함

1) 본 규제는 EU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EU 시민의 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됨
 2) 정보이동권(Right to data portability)이란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타 기관으로 정보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
 3) 처리제한권(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ng)이란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
 4) 개별 위반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결정하며, 최대 연간총매출액의 4%에 해당하는 과징금(혹은 2천 만 유로 중 큰 금액)을 부과할 수 있음

- EU의 GDPR시행으로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이 많은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
 - SAS(2017)⁵⁾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, 소비자가 개인정보 열람 권리(Right of access)를 행사하려는 산업으로 보험업(29%)이 은행업(32%)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또한, 소비자가 개인정보 삭제 권리(Right to erase)를 행사하려는 기업으로는 보험회사(33%)가 소셜미디어회사(39%)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

- GDPR시행으로 기존 데이터 자산의 경쟁력 약화, 새로운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 등이 보험산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⁶⁾
 - 제20조 정보이동권은 신규 기업의 정보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진입장벽을 완화시킴으로써, 기존 보험회사가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 자산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킴
 -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련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내 데이터관리 시스템의 보수 및 정보이동 요청에 대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

- 전 세계는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있으며, 이에 따라 국가별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 - 중국은 2017년 6월부터 시행한 「네트워크보안법」(网络安全法)에 따라 중국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중국에서만 저장하도록 의무화하여, 외국으로의 데이터 유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함
 - 일본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이며, 특히 제1조⁷⁾ 목적에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높임

-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5월 11일 「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」을 발표함
 - 동의제도 개선, 소비자의 프로파일링 대응권 강화,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, 관리 및 감독 강화, 정보보호 우수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**kiri**

5) SAS에서 2017년 5월에 2,000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GDPR 시행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함
(https://www.sas.com/en_gb/news/press-releases/2017/july/uk-adults-poll-intend-to-activate-new-personal-data-rights.html)

6) Oliver Wyman(2018. 5), “GDPR: The Door to the Future”

7) 개정법 1조에 “개인정보의 적당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새로운 산업 창출 및 활력있는 경제사회 및 풍요로운 국민생활 실현에 이바지” 부분이 추가됨(개인정보보호위원회(2017. 12), “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·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” 참고)